

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.

가. 발령사유 :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조치

나. 적용지역 : 도내 전지역

다. 기 간 : 2020. 8. 30.(일) 0시 ~ 9. 7.(월) 24시

라. 대 상 : 관내 고위험시설(12종), 중위험시설(6종), 기타(2종)

마. 주요내용 : 대상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

바. 세부내용

① 집합금지

<고위험시설>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뷔페, pc방, 실내집단운동(GX 체력단련장, GX 스피닝, GX 줌바)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 공연장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직접판매 홍보관
<중위험시설> 공연장, 게임장·오락실, 목욕장·사우나, 실내워터파크, 실내체육시설(배드민턴장, 볼링장(락볼링장 포함), 체력단련장, 무도장, 무도학원, 체육도장, 수영장)

② 10인 이상 집합금지 : 키즈카페, 견본주택, 학원(300인 미만)

사. 위반시 조치

- 조치내용 : 고발(300만원 이하의 벌금), 10만원 이하 과태료
- 손해배상 :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될 수 있음

아. 관련근거

- 근거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- 벌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, 제83조

2. 이 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3. 시설별 담당자(문의처)

시설	시설	부서명	담당팀장	연락처(061-)	비고
고위험 시설	유흥주점	식품의약과	홍성후	286-5760	
	단란주점				
	감성주점				
	헌팅포차				
	뷔페				
	노래연습장	문화예술과	김우형	286-5450	
	PC방				
	실내스탠딩공연장	문화예술과	김봉균	286-5430	
	실내집단운동(GX류)	스포츠산업과	김용신	286-5530	
	학원	희망인재육성과	배용석	286-3440	
	직접판매 홍보관	중소벤처기업과	김형수	286-3790	
중위험 시설	게임장·오락실	문화예술과	김우형	286-5450	
	공연장	문화예술과	김봉균	286-5430	
	목욕장·사우나	식품의약과	홍성후	286-5760	
	실내워터파크	관광과	정홍일	286-5260	
	실내체육시설	스포츠산업과	김용신	286-5530	
기타	건본주택	건축개발과	정영수	286-7720	
	키즈카페	식품의약과	홍성후	286-5760	

2020년 8월 28일

전라남도지사

